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의 명칭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명칭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계청에 지역투자동향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시설·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가계통계 관련 자료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되, 충청지방통계청장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통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를 “동남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통계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청지방통계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19조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6장(제23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87”을 “689”로 하고, 일반직 계 “686”을 “6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76”을 “67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22”를 “1,4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22”를 “1,42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18”을 “1,419”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통계청장의 관 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u>통계교육원</u> 을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u>통계인재개</u> <u>발원</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 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 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라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u>통계개발원</u> 을 둔다.	③----- ----- ----- ----- ----- ----- <u>국가통계연구</u> <u>원</u> -----.
제3장 <u>통계교육원</u>	제3장 <u>통계인재개발원</u>
제12조(직무) <u>통계교육원</u> (이하 “ <u>교</u> <u>육원</u> ”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 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 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관장한다.	제12조(직무) <u>통계인재개발원</u> --- ----- ----- ----- ----- ----- ----- -----.

제13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
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
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
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
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
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략)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통계개발원의 하부조직 설치
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
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

제13조(원장) ①통계인재개발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하부조직) -----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

제3장의2 국가통계연구원

제14조의2(직무) 국가통계연구원

-----.

1.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가통계연구원-----

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통계청장) ① (생략)

②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통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통계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동남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통계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통계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계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하부조직) -----

-----국가통계연구
원-----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통계연구
원-----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7</u>	<u>689</u>	+2
·	·	·	
·	·	·	
일반직 계	<u>686</u>	<u>688</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76</u>	<u>678</u>	+2
·	·	·	

[별표 3]

통계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22</u>	<u>1,423</u>	+1
일반직 계	<u>1,422</u>	<u>1,423</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18</u>	<u>1,419</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502